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직인생략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 02-782-0367/팩스 02-782-6659
담당부서: 대외협력팀 부서장: 송자은 부장 담당자: 이해영 대리 e-mail: hyoung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9-263호

시행일자: 2023.9.12.

수신자: 영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「화장품법」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5968호(2023.9.11.) 관련입니다.

3.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·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·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 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3년 9월 20일(수)까지 우리협회(이메일: hyoung@kci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: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.

붙임2: 검토서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